

## 스틴슨 비치 카운티 수도 사업소

결의 번호 GB-2020-01

### 주택용 수도 서비스 중단 정책 수립 이사회 결의

캘리포니아 정부법 60370항, 캘리포니아 공공재법 10001항, 보건안전법 116900항 및 SB998은 사업소가 요금 미납으로 인한 주택용 수도 서비스 중단에 관한 서면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스티슨 비치 카운티 수도 사업소의 이사회가 다음과 같은 주택용 수도 서비스 중단 정책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 주택용 수도 서비스 중단 정책

#### I. 배경

이 정책은 스티슨 비치 카운티 수도 사업소(사업소)가 공공재 서비스의 중단을 통제하는 캘리포니아 정부법 60370항 이하, 캘리포니아 공공재법 10001항 이하, 보건 및 안전법 116900항 등을 준수하기 위해 채택되었습니다. 보건 및 안전법 116900항 등 상원 법안 998에 의해 제정된 수도 중단 보호법에 따라, 당 수도 사업소와 같은 도시 수도 공급자와 도시 및 지역사회 수도 기관은 요금 미납으로 인한 주택용 서비스의 중단에 관한 서면 정책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사업소 웹사이트에서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및 한국어로 제공되고 게시됩니다.

#### II. 주택용 수도 서비스 요금 납부

사업소에서 수도 서비스를 받는 모든 사람은 내역서 또는 청구서가 우송되는 달의 마지막 업무일의 전날까지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에 의해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소는 완전하고 시의적절한 납부가 되지 않은 경우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소는 해당 계정이 60일 이상 체납될 때까지는 요금 미납으로 인해 주택용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 III. 요금 이의 신청

고객이 주택용 수도 서비스에 대해 초과 요금이 부과되거나, 제공되지 않은 주택용 수도 서비스에 대해 요금이 청구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객은 내역서 또는 청구서 수령 후 5일 이내에 사업소 3785 Shoreline Highway, P.O. Box 245, Stinson Beach, CA 94970로 서면 통지함으로써 납부할 금액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평가하고 문제를 조사합니다. 총 관리자는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하고, 해당하는 경우,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금액을 조정할 권한을 갖습니다.

고객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총 관리자의 결정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사회에 그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기록을 검토하고 다음 정기 이사회 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사회 결정은 최종 결정이

됩니다.

#### **IV. 주택용 서비스 중단 통지**

사업소는 고객 및/또는 실제 사용자에게 서비스가 종료되기 최소 10업무일 전까지 연체 요금 및 임박한 서비스 종료에 대한 통지를 제공합니다. 서면 통지서는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 **V. 주택용 서비스 중단 방지**

수도 서비스의 고객 및/또는 실제 사용자는 (415) 868-1333으로 사업소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요금 미납으로 인한 주택용 서비스 중단 방지 옵션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중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업무일 이내 또는 그러한 통지를 받기 전에, 고객은 사업소에 납부 연기 또는 감면 납부 계획, 대체 납부 일정 또는 분할 납부 합의 등 서비스 중단을 방지할 대체 납부 옵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요청 시, 고객은 정상적인 납부 기간 동안 청구서 전액을 지불하기 어렵다는 증빙 문서를 사업소에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는 그러한 요청을 자체 재량으로 승인할 수 있지만, 다음 조건이 모두 만족될 경우 주택용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그러한 요청을 승인합니다.

1. 복지 및 기관 규정 14088항 (b) (1) (A)의 정의에 따라, 주택용 서비스의 중단이 주택용 서비스를 받는 장소의 거주자에게 생명을 위협하거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고객 또는 고객의 임차인이 1차 의료 제공자의 확인서를 사업소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2. 고객이 다음 중 한 가지를 만족하여 사업소의 정상적인 청구 주기 내에 주택용 서비스 비용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음을 입증합니다.
  - a. 고객의 가구 구성원 중 누구라도 CalWORKs, CalFresh, 일반 지원, Medi-Cal, 생활 보조금/주 보조 납부 프로그램, 여성,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캘리포니아 특별 보충 영양 프로그램의 지원을 현재 받고 있는 경우, 또는
  - b. 고객이 가구의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 미만이라고 신고하는 경우. 그리고
3. 고객이 이 정책에 따라 할부 납부 계약, 대체 납부 일정 또는 유예 또는 면제된 납부 계획을 기꺼이 체결합니다.

이러한 경우 또는 자체 재량으로 사업소는 해당하는 경우 다음 옵션 중 한 가지 이상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1. 미납 잔액의 분할 납부.
2. 대체 납부 일정.
3. 미납 잔액의 부분 또는 전액 감면.
4. 임시 납부 연기.

사업소는 고객이 수행할 납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소의 재량에 따라 해당 납부 옵션의 매개변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상환 옵션을 선택하면 12개월 이내에 미결제 잔액을 전액 상환해야 하지만, 사업소는 고객의 특정 상황에 따라 과도한 어려움을 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더 긴 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2월 15일 개최된 스티븐 비치 카운티 수도 사업소 이사회 회의에서 **통과 및 채택:**

찬성: Boucke, Cross, Nelsen, Zell

반대:

불참: Baskin

기권:

---

Sandra Cross, 이사회 부회장 스티븐 비치

카운티 수도 사업소

증명:

(봉인)

---

Ed Schmidt, 이사회 총무/총 관리자  
스티븐 비치 카운티 수도 사업소